

(1) 지방분권에 따라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축소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요원 등의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전환함.

(3)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행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조정(영 별표 5)

(1)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자율화 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의원정수가 3천485명에서 2천88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던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조정이 필요함.

(2)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자치구

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함.

(3) 지방의원의 정수와 연계된 의회사무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고 의회사무기구 규모의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6월29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이용섭

●대통령령 제1956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중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을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중 “20세”를 “19세”로, “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세”를 “19세”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20세”를 “19세”로 하고, 동항 후단중 “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중 “20세”를 “19세”로,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중 “20세”를 “19세”로,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

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20세”를 “19세”로,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제10조의8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9(지방의회에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의10제1항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의11제1항 전단중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의 8”을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10조의8제1항”으로, “20세”를 “19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0조의7제3항 및 동조제4항”을 “제10조의7제4항 및 제5항”으로,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의15중 “제10조의6제2항”을 “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의16중 “제10조의15”를 “법 제13조의4제7항, 이 영 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 및 제10조의13”으로 한다.

제10조의17제1항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의19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제10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

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의 부지사”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에 표시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광역시와 도”를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제7항중 “기준으로 하며,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매 연도말”로,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고”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전년도 각 분기말 인구수를 산술평균한 인구수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연

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하며”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직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직급기준의 조정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 공포·시행)되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및 감사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영 제10조의7제2항 신설, 영 제10조의11제1항)

-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감사청구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심사의 객관성 강화(영 제10조의19제3항 단서 신설)
-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에 논란이 있음.
 - (2) 조례·규칙심의회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

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3) 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지사 및 부시장의 직급 변경(영 제39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체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관리관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함.

라.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책정 기준 개선(영 제39조제7항)

(1)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매 연도말 주민수를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지 아니하도록 인위적으로 주민수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 기준을 매 연도말 주민수에서 전년도 각 분기말 인구수를 산술평균한 주민수로 변경함.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책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자의적인 직급책정을 방지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